

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
법률 시행규칙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위원 이종호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연 월 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제정 이유

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 「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8738호, 2022.1.11. 공포, 2023.1.12. 시행) 및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보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(제2조제1항, 별지 제1호서식)
- 나. 보안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(제2조제2항, 별지 제2호서식)
- 다.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(제3조, 별지 제3호서식)
- 라. 보안인증 표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제4조, 별표 제1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부처 협의 전
- 라. 기타 : 1) 입법예고(2022. 12. 6. ~ 12. 30.) 예정

2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전

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보안인증의 신청 등) ①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보안인증 신청서”란 별지 제1호서식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신청서를 말한다.

② 영 제15조의2제6항에서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서”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인증서를 말한다.

제3조(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신청 등) ① 영 제15조의6제2항에서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”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·평가기관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

다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(보안인증의 표시)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제1호] 보안인증의 표시

[별지 제1호서식]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신청서

[별지 제2호서식] 보안인증서

[별지 제3호서식] 인증기관·평가기관 지정 신청서

보안인증의 표시(제4조 관련)

1. 보안인증 표시



2. 보안인증표식의 표시 방법

- 가. 보안인증표식 아래에는 인정을 받은 사업자명,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명, 인증을 받은 연도 및 해당 연도에 인정을 받은 순서에 따라 인정기관에서 부여하는 번호를 순차적으로 기입한다.
- 나. 인증표식은 제1호에 따른 색상을 사용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인정마크를 표시하는 인쇄물의 주된 단일색상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거나 인증표식의 색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탕색 위에 흑백으로 사용할 수 있다.
- 다. 인증표식의 크기는 표시물 대상의 크기나 표시장소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인증표식을 같은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표시해야 한다.

3. 보안인증표식 표시에 대한 유의사항

- 가. 인증 취득 사실의 홍보는 보안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사용이 가능하다.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에 대한 홍보, 보안인증서 및 보안인증표식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
- 나. 인증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유효기간, 인증범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고, 인증된 서비스 외에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정마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.
- 다.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의 사실을 과장되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.

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하고,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	처리기간
------	------	-----	------

신청인	업체명(상호명) :	사업자등록번호 :
	성명(대표자) :	전화번호 :
	주소 :	

클라우드보안 인증 총괄 실무자	성명 :	전화번호 : 이메일 :
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

인증 신청의 구분	[]최초평가	[]갱신평가	[]사후평가
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명칭			
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에 대한 간략한 설명			

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
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클라우드 보안인증 신청 공문 1부 취약점 점검 및 침투테스트 동의서 1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명세서 1부 사업자등록증(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) 1부
------	--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수 및 사전준비사항 확인 평가기관	→	수수료 납부 신청인	→	인증평가 평가기관	→	인증위원회 심의 인증기관	→	보안인증서발 급 처 리 기 관
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210mm×297mm[(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CSAP- - 호

인 증 서

업체명 :

대표자 :

인증서비스 :

인증의 범위 :

인증유효기간 : 년 (. . . ~ . . .)

평가기관 :

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인증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인터넷진흥원장
또는 인증기관의 장

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(150g/㎡)]

인증기관·평가기관 지정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기관구분	[] 인증기관 [] 평가기관	
신청구분	[] 신규 [] 재지정	
신청인	업체명(상호)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
	주소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
	인터넷 홈페이지 주소	
	전자우편 주소(e-mail)	
	총 직원 수 (신청일 기준)	인증평가를 수행하는 직원 수(신청일 기준)

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제5항,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 (각 3부)	1. 법인(사업자)의 정관 또는 규약 1부 2. 인증평가원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업무수행 요건·능력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	수수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없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 수 처 리 기 관	→	심 사 처 리 기 관	→	지정여부 결정 처 리 기 관	→	지정서 교부 처 리 기 관
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

210mm×297mm[(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